

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

- 청 약 자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- 주민등록번호 :

위 본인은 무등록 소상공인(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)으로서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계약을 청약함에 있어, “폐업 신고에 의한 폐업 확인”이 불가능하여 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사유 중 제1호 폐업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가입자보다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확인하였음.

‘사업자 무등록’에 따른 불이익

- 무등록 소상공인은 공제사유 중 “폐업”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“노령(만 60세 이상, 10년 이상 납입)” 또는 “사망”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금 청구가 가능함.
-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노령 또는 사망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상실될 수 있음.

20 년 월 일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(2017. 8. 3. 신설, 2017. 9. 1. 시행)